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8-센터-08-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
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전송일자 : 2018. 8. 6.(월)

전송매수 : 총5매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 13조의10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법령으로 보장하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17년 제안한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개정안은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어 피의자 및 변호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안 제13조의10 단서), △특히 피의자등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변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명시(개정안 제9조의2 제4항 제4호)한 것은 피의

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4.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이 석 태

[첨부_의견서]

가.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록 관련 제9조의2, 제13조의10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수기 기록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원칙적 찬성

○ 현행법령은 피의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메모를 허용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았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 대하여 메모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참여 제한 사유로 예외적·소극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었음. 즉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4항 제4호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인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 제4호에서도 같은 경우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었음. 즉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기록하는 행위를 여전히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한 점에서 이번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13조의10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보장한 것은 의미있는 개선이라고 할 것임.

(2)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둔 제13조의10 단서에 대한 반대 또는 이의

○ 그러나,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10 단서는 너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은 개선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키고 있음. 구체적으로,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제1호)를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제한으로서 삭제되어야 함. 첫째, 신문내용을 전자기기로 기록하는 것은 휴대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행위는 기록의 매체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수기로 기록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둘째, 시대 변화에 따라 기록 방식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방식이 기록의 보존에 용이함. 특히 민사·행정소송은 이미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대체되고 내년부터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예정인바, 전자기기를 통한 기록이 향후 좀더 보편화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전자기기를 통한 기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함. 셋째,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행위는 개정전 규정에서도 금지되지 않던 것인바, 이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개악일 수 있음. 따라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함. 한편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는 것 역시 수기로 기록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고 수기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진술녹음 및 녹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의자측의 녹음만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세부적 기준 없이 내용의 일부에 대한 촬영·녹음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임.

○ 다른 제한사유 역시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

- ‘수사지연,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는 그 우려 여부를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바, 이러한 자의적 판단 여지를 제한하여야 함.

-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제3호) 부분은 별도 유형으로 정하여 일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신문종료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일부를 기억환기를 위해 기록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조서 전부를 옮겨쓰는 경우를 예상하여 제한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판단하면 족할 것임
-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역시 수사기관의 전적인 판단 재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정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필요함.

(3)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을 변호인참여 제한사유로 신설한 제9조의2제4항 제4호 후단 부분 반대

○ 개정안은 수기 기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수시 기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기록 방식인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을 제13조의10에서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9조의2제4항 제4호 후단에서 이를 변호인참여 제한 사유로까지 명시함. 이러한 제한사유 추가는 변호인참여가 피의자방어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와 별도로 변호인의 변론을 위한 필수적 장치라는 점에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바, 삭제되어야 함.

나.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이 석 태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대덕빌딩) 2층

○ 전화번호: 02-522-7283